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7.11.23 ~ `18.02.28

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03.01 ~ `18.03.11

- 버스장착·기동(시민신고) : `18.01.31 ~ `18.03.11

나. 통보건수 : (쥬에이치디렌트카 등) 3,319명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버스장착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3,911	3,319	3,183	111	25	592	-연속단속
전회 누계	47,408	29,536	28,907	428	201	17,872	-면제차량 -진입구간 짧음
누계	51,319	32,855	32,090	539	226	18,464	-자납 -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8.03.16 ~ `18.04.05(20일간)

- 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 발송 내역 1부.  
 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

# 서울특별시

주무관	노미선	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자	교통지도과장	03/19 김정선
협조자				
시행	교통지도과-5680	( )	접수	( )
우	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		/	
전화	2133-4569	/전송	2133-4904	/
				/ 부분공개(6)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8-04-09 14:31:38